

## 환경분쟁조정

### < 현풍공단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벼 피해분쟁조정사건 >

#### 1. 사건의 개요

##### <사건 요지>

대구시 달성군 현풍공단 인근주민들이 (주)○○ 외 5개사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벼 피해 및 정신적피해를 입었다며, 113,315,680원을 청구한 재정신청 사건임

##### 가. 당사자 주장

- 신청인들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공단 내에 위치한 (주)○○ 외 5개사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96,502㎡에 이르는 논의 벼가 정상적으로 생육되지 아니하고, 벼 피해에 따른 걱정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신청인들은 신청인들에게 113,315,68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
-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소각시설을 먼 곳으로 이전 설치하였고, 열공급시설의 연료를 B-C유에서 LNG로 변경하였으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는 일부지역에 한정하여 발생하였고, '96년부터 '98년 사이에는 별다른 피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명확한 원인규명이 없이는 보상이 불가 하며, 일부 피신청인들은 자기업체와는 무관한 사이라고 주장.

#### 2. 사실조사

##### 가. 분쟁지역 개황

- 본 분쟁이 발생한 곳은 사방이 논으로 되어 있는 평坦한 지형으로서 중심부에는 '81년 도에 조성된 현풍공단이 위치해 있고, 공단 북쪽에는 공장폐수가 흐르는 폭 4m의 소하천을 사이에 두고 신청인들의 논이 있으며, (주)○○을 중심으로 북쪽방향으로 피해가 발생되어 있다.

##### 나. 피신청인들의 공장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

- 피신청인들의 업종은 종이관련제조업 3개소, 폐차장업 1개소와 농기계제조업 1개소, 자동차정비업 1개소로써, 피해가 발생한 '99. 7월~8월 사이에 (주)○○은 합침공정에서

메탄을 591,118kg을 사용하였고, 소각시설에서 폐지류 13.75톤을 소각시켰으며, ○○제지(주)는 B-C유 3,912kl와 폐합성수지 등 1,066톤의 폐기물을, ○○제지(주)는 B-C유 467kl와 폐합성수지 등 1,559톤의 폐기물을 열공급시설에서 연료로 사용하거나 소각시설에서 소각시켰다. 그리고 ○○산업(주)는 폐차 폐기물을 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하였다.

- 또한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자가측정기록과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서 측정한 자료에 의하면 (주)○○의 합침공정에서 메탄을과 소각시설에서 질소산화물 24ppm, 포름알데히드 0.19ppm, 시안화수소 3.65ppm가 배출되었고, ○○제지(주)의 열공급시설 또는 소각시설에서 황산화물 96.87ppm, 질소산화물 195.91ppm, 염화수소 1.7ppm, 불화수소 1.309ppm이 배출되었으며, ○○제지(주)의 열공급시설 또는 소각시설에서는 황산화물 136.37ppm, 질소산화물 242.95ppm, 염화수소 1.7ppm, 불화수소 1.963ppm이 배출되었다. 그리고 ○○산업(주)의 소각시설에서는 황산화물 3.9ppm, 질소산화물 62ppm, 염화수소 2.4ppm, 불화수소 1.953ppm이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문쟁조정

### 다. 신청인들 벼 피해 실태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장과 유가면장이 발행한 경작확인서에 따르면 피해면적은 96,502㎡이었고, 피해증상은 재배품종에 관계없이 벼 잎에 갈색 또는 적갈색의 반점이 엽맥을 따라 거의 모든 잎에 발생되어 있으며, 공단에 가까울수록 피해정도가 심하게 나타나 있는데, 특히 (주)○○에 인접한 곳이 피해상태가 심하였고 공장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약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 라. 피해지역 대기질 및 기상 현황

- 피해지역의 대기질은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서 '99. 10. 8~10. 9 사이에 측정한 자료에 의하면 먼지  $124\mu\text{g}/\text{m}^3$ , 아황산가스 0.01ppm, 이산화질소 0.022ppm, 오존 0.011ppm, 일산화탄소가 0.5ppm으로 단기환경기준 이하로 나타났으며, 피해기간중 주풍향은 기상월보에 따르면 남동풍인 것으로 나타났다.

## 3. 인과관계

### 가. 대기오염에 의한 벼 피해

- 피신청인들 가운데 (주)○○, ○○제지(주), ○○제지(주) 및 ○○산업(주)의 제품제조공

## 환경문제 조정

정, 열공급시설 또는 소각시설에서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과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시안화수소, 염화수소, 불화수소, 포름알데히드가 배출되었고, 피해지역의 주풍향은 남동풍으로 이러한 오염물질이 피해지역으로 이동하였을 것이 예상되고, 관련문현(농작물환경오염피해해석, 농업과학기술원, 1998)에 의한 벼 피해 증상과 전문가의 의견 및 공단에 가까울수록 피해정도가 심한 점등을 고려하면 대기오염에 의한 피해가 확실시된다. 또한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의 질병여부 조사결과 병원균이 발견되지 않았고, 농업용수는 상류지역의 저수지들을 이용하였으며, 주변에는 다른 오염원이 없었던 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남지원의 조사자료에 의한 피해지역의 예상수확량이 대조지역에 비하여 감소되었고, 벗짚도 많이 손상된 것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및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복합작용에 의한 피해로 판단되어 벼 수확량 감소 피해 및 벗짚 손실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 그러나 미질 저하 피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남지원의 벼 품위 조사결과 피해지역의 10개 조사지점중 9개지점에서 1등급 판정이 나왔으므로 대기오염에 의해 미질이 떨어졌다고는 볼 수 없으며, 피해지역의 대기질이 환경기준이하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들이 대기오염에 의해 작업능률이 감소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작업능률 감소 피해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나. 벼 피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 벼 피해 발생으로 신청인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재산상 피해의 배상으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는 것이 일응 타당함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따로 배상하지 아니한다.

### 4. 배상액

#### 《배상액 산정》

- 벼 수확량 감소 피해액=신청인별 피해면적 × '99년 대조지역의 단위면 적당평균벼예상수확량 × 예상수확량감소율 × '99년 정부 벼 수매가격
- 벗짚 손실 피해액=신청인별 피해면적 × '99년 현풍면 단위면적당 벗짚 거래가격 × 벗짚손실율

## 《결과》

따라서 (주)○○, ○○제지(주), ○○제지(주) 및 ○○산업(주)가 부진정 연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벼 수확량 감소 피해액 24,588,872원과 벗짚 손실 피해액 802,466원을 합하여 총 25,391,338원이 된다.

또한 피신청인들은 향후 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원료 및 연료의 변경, 방지시설의 개선 및 담장이나 수립대의 조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5. 재정결과에 대한 당사자 승복여부

- 승복

환경분쟁조정

